

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
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15-24번지 일대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9월 5일

구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종류 : 재개발사업(도시정비형)
- 사업명칭 :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법인명 : 남구로재개발통합위원회(토지등소유자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24, 2층(가리봉동)
- 대표자 : 윤기욱
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15-24번지 일원
- 면적 : 10,832.4㎡

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2025년 10월
- 준공예정일 : 2028년 10월

5. 사업대행결정일 : 2024년 9월 5일(고시문 구보 게재일)

6. 사업대행자

- 사업대행자 :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근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, 삼성빌딩)

7. 대행사항

- 1) 자금의 차입 및 차입 집행·관리
- 2)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
- 3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
- 4) 협력업체의 선정 및 변경(기존 통합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와의 승계 계약 포함)
- 5)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
- 6)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·관리
- 7)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
- 8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9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
- 9)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허가 업무
- 10) 총회개최
- 11) 기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자치규약에서 정한 업무

8. 기타사항

-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2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, 자금의 차입,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. 끝.